

# 광주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1992년 10월 28일

###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10월 22일 정 재 수 의원의 16인
- 나. 회부일자 : 1992년 10월 28일
- 다. 상정일자 : 1992년 10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의결

### 2. 提案說明의 要旨

( 提案說明者 : 鄭 在 洙 議員 )

#### 가. 제안이유

- 1992년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1) 국내여비 규정상 여행지의 구분변경

- 여행지 구분을 종전 3구분(특지, 갑지, 을지)에서 2구분(갑지, 을지)으로 변경

##### 2) 의회소재지내 출장여비 지급기준 신설

-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직할시와 서구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教育으로 檢討報告 없었슴.

**4. 審查結果 : 原案可決**

## 광주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와 【별표 3】 의회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 기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 내 여 비 지 급 기 준 표 (제7조제1항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 차운 임	현지교통 비(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식탁료 (1야당)
의장·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갑지 5,000 을지 4,500	갑지 17,000 을지 15,000	갑지 11,000 을지 9,500	800
의원	2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갑지 4,500 을지 4,000	갑지 14,000 을지 11,500	갑지 10,500 을지 9,000	800

- 비고 : 1.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 "을지"는 갑지외의 지역으로 한다.
2.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직할시와 서구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 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4.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5.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 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의회소재지내출장시여비지급기준표

(제8조제1항 관련)

여행거리	지급액
12 km 이상	○ 현지교통비 . 식비 . 숙박비 전액
12 km 미만	○ 현지교통비 . 식비 전액

### 新 · 舊條文對比表

개 정										안									
【별표 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제7조제1항관련)										【별표 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제7조제1항관련)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차 임	현지 교통비(1)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식탁 료(1야당)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차 임	현지 교통비(1)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식탁 료(1야당)		
의장 · 부의 장	1 등 급	2 등 정액	정액	정액	갑지 5000 을지 4500	갑지 17,000 을지 15,000	갑지 11,000 을지 9,500	800	의원	2 등 급	2 등 정액	정액	정액	갑지 4500 을지 4000	갑지 14,000 을지 11,500	갑지 10,500 을지 9,000	800		
의원	2 등 급	2 등 정액	정액	정액	특지 4500 갑지 4500 을지 4000	특지 16,000 갑지 15,000 을지 13,500	특지 10,500 갑지 10,000 을지 9,000	800	의원	2 등 급	2 등 정액	정액	정액	특지 4000 갑지 4000 을지 3500	특지 13,500 갑지 11,500 을지 10,500	특지 9,500 갑지 9,000 을지 9,000	800		
비고: 1.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시 지역으로 "을지"는 갑지외의 지역으로 한다.										비고: 1.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시 지역으로 "을지"는 갑지외의 지역으로 한다.									
비고: 2.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직할시와 서 구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 거리가 12 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을 지급하여야 한다.										비고: 1. "특지"는 서울특별시, 과천시, 과천시, 경주시 및 제주시로 "갑지"는 도청소재지, 성남시, 안양시, 부 천시, 광명시, 의정부시, 안산시, 구리시, 원주시.									

### 新 · 舊條文對比表

현	개 정 안
<p>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충주시. 이리시. 군산시. 목포시. 여주시. 나주시. 구미시. 포항시. 영천시. 마산시. 울산시. 진주시. 서구포시로 "을지"는 기타지역으로 한다.</p> <p>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허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p> <p>3.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p>	<p>3.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p> <p>4.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p> <p>5.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급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p>

新 · 舊條文對比表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의회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 기준표 (제8조 제1항 관련)	의회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 기준표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 3】 의회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 기준표 (제8조 제1항 관련)		
여 행 거 리	지 급 액	여 행 거 리	지 급 액	여 행 거 리
12킬로미터 이상	"별표 1"의 현지교통비 전액	12킬로미터 이상	"별표 1"의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비 전액	
12킬로미터 미만	"별표 1"의 현지교통비의 5할			
8킬로미터 이상	대중교통요금 실비정액			
8킬로미터 미만		12킬로미터 미만	"별표 1"의 현지교통비. 식비 전액	
2킬로미터 이상				
2킬로미터 미만	지급하지 아니함			
비고: 대중교통이라 함은 버스 또는 지하철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대중교통수단의 정기운행 간격이 1시간 이상인 지역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일반택시 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				